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향기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44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1월 31일

발 의 자: 곽향기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강석주, 고광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춘선, 박철성,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아이수루, 옥재은,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종태, 이희원,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57명)

##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됨.
-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례·행정계획 등에 대한 검토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 또한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례·행정계획 등에 대한 검토 기능을 추가함 (안 제10조 신설)

나. 위원장 체제 및 위원 수를 변경함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를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과 제5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9조의2(조례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 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 · 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 ·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u></li> <li><u>2.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u></li> </ol> |

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후환경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⑨ (생략)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  
-----.

③ ----- 행정1부시장과 제5항제3호의 위원 중 호선된 사람으로-----  
-----  
-.

④ ~ ⑨ (현행과 같음)

문서번호

2022102500000016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곽향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2.10.25.

회신일 : 2022.10.27.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 를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 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46,000천원(연평균 9,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9,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3~2027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안 제10조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46,000천원(연평균 9,200천원)

- 총비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 구분          |                            | 연도    | 1차년도<br>(2023년) | 2차년도<br>(2024년) | 3차년도<br>(2025년) | 4차년도<br>(2026년) | 5차년도<br>(2027년) | 계      |
|-------------|----------------------------|-------|-----------------|-----------------|-----------------|-----------------|-----------------|--------|
|             |                            | -     | -               | -               | -               | -               | -               | -      |
| 세입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세출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br>운영비(안 제10조) | 9,200 | 9,200           | 9,200           | 9,200           | 9,200           | 9,200           | 46,000 |
|             | 소계(b)                      | 9,200 | 9,200           | 9,200           | 9,200           | 9,200           | 9,200           | 46,000 |
| □ 총 비용(b-a) |                            | 9,200 | 9,200           | 9,200           | 9,200           | 9,200           | 9,200           | 46,000 |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비 = 46,000천원
  -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 40,000천원+6,000천원
- 참석수당 = 40,000천원
  -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 200천원×20명×2회×5년
- ※ 참석수당 단가 :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 지급인원 : 본 조례 개정으로 증가한 의원 수 20명(40명-20명)
- 업무추진경비 = 6,000천원
  -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 30천원×20명×2회×5년
-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4.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
| 담 당 관  | 조도형                          |
| 추계세제팀장 | 이정수                          |
| 주 무 관  | 김지혜                          |
|        | ☎ 02-2180-7955               |
|        | e-mail : kjh0123@seoul.go.kr |